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참 고 자 료**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0. 4. 7.(화)	담당부서	석유산업과
담당과장	윤창현 과장(044-203-5220)	담 당 자	신유철 사무관(044-203-5222) 서미주 사무관(044-203-5223)

석유수입·판매부과금 90일간 징수 유예

- 석유공사 여유 저장시설은 정유업계에 대여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**코로나19**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**석유수입·판매부과금 징수 유예** 등 지원방안을 발표함

○ 이번 지원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**전 세계적 석유 수요 감소** 등의 여파로 국내 석유업계에 **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**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임

□ 정부는 국내 석유업계가 **직면**하고 있는 ❶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**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**, ❷**석유 저장 공간 부족 문제** 등의 해결을 우선 지원할 계획임

❶ 정부는 **4~6월분 석유수입·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***하여, 부과금을 납부하는 **54개 석유사업자****의 **자금 부담을 완화**

* 4월분은 7월, 5월분은 8월, 6월분은 9월에 납부(7월분부터는 당초 예정월에 정상 납부)

** 원유, 석유제품, 액화천연가스(LNG)를 수입하는 정유사, 석유화학사, LNG 수입사 등

석유수입·판매부과금 현황 및 징수유예 근거

◇ **(부과금 개념)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**을 위해 석유정제업자,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부과·징수하는 부과금(근거 :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)

◇ **(징수 현황**('19년)**)** 순징수액* 1.6조원 규모(정유업계 순징수액은 7천여억원)

* 3.8조원 규모 징수액 중 2.2조원 이상이 환급됨

◇ **(징수유예 법적근거)** "국제 석유가격의 급격한 등락, 과도한 당기순손실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,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" **징수유예 가능**(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)

- 3개월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**9000억원 규모의 납부 부담 완화(연기)*** **효과**가 있을 것으로 추산됨

* 월평균 징수액 3천여억원('19년 기준) * 3개월 (환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가능)

❷ 석유공사는 석유업계의 **저장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** 위해 **공사의 여유 비축 시설**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장탱크 **임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**

*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한 실무협의 진행 중

□ 정부는 **국제유가대응반 회의***, **석유공사-정유사 간 실무 전담팀(TF,** 매주 개최) 등을 통해 **석유업계, 연구기관,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**하고 있으며, **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, 석유업계 경영 여건**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임

* 3.9일부터 석유업계, 에경연, 석유공사, 민간 전문가 등과 총 6회 개최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신유철 사무관(☎ 044-203-52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